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수정 1 차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1,344,761	12,940,343
일반회계	400,605,265	12,018,158
특별회계	30,739,496	922,185
기타특별회계	30,739,496	922,18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59,768	160,793
수질개선특별회계	6,362,444	190,87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6,265	13,688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200,000	6,000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4,371,381	131,141
하수도특별회계	12,498,138	374,944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1,491,500	44,745

제 2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500,000천원이고, 재난·재해예비비는 2,493,603,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